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2. 10 선고 2020가단10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등]

전 문

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정원일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훈

변론종결 2021. 1. 27.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10. 16. 접수 제16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녀로는 피고, D, B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27.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은 2019. 10. 22.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하고 B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2019느단10015). 위 법원은 2019. 12. 16. B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2019느단100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1) E생인 원고는 2008년경부터 알츠하이머 형태의 초기치매 증상을 보여 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하였고, 2016. 8. 1.경부터 에빅사정 등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9.과 2018. 1. 17.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검사를 받았다. 위 병원 소속 주치의 G은 원고의 판단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해결,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이라는 평가를 하였고,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직장생활, 물건사기,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 등에서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또는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보임'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년 2월경 H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2018년 5월경 I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I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간호하고 있는 J 작성 사실확인서에는 '원고는 입소 당시부터 시간, 장소 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판단력과 학습능력이 없는 중증의 치매증상을 보였다. 원고가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작성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써 놓은 글을 보고 그대로 적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대구가정법원 소속 조사관 K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9. 8. 2. 원고를 면담한 후, 원고가 시간, 장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응? 응?”이라고 되묻기만 하는 등 인지기능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성년후견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무엇보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 대한 후견개시절차 진행 중인 2019. 5. 29.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에 '원고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9. 10. 22. 위

법원에서 실시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법무사 L은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8. 9. 27. 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제3호증의 4)을 자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음이 분명해 보였고, 원고에게 치매증상이 있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등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을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은 원고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슬기

별지

목록

1. 경북 의성군 M 대 271㎡
2. 경북 의성군 N 대 106㎡
3. 경북 의성군 O 전 311㎡
4. 경북 의성군 P 답 2,808.9㎡1)
5. 경북 의성군 Q 답 1,995.1㎡
6. 경북 의성군 R 답 1,907.9㎡
7. 경북 의성군 S 대 231㎡

8. 경북 의성군 T 답 4,745.8㎡

9. 경북 의성군 U 임야 5,118㎡. 끝

1)단순오기는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